

오리콤	HR 이사회운영 규정	오리규정 A-02-023		1/4	
		제정	1982 년	1 월	1 일
		개정	2013 년	5 월	3 일
1. 목 적 본 규정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3. 회의일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6조에 의한 소집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소집권자 및 의장 4.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단, 위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제4조 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2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4.3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 임원인사관리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4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4.4.1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회 소집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직전일까지 소집 목적, 회의 일시, 장소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소집청구 6.1 이사는 이사 3인 이상의 공동으로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3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6.2 전항의 경우 그 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 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HR	이사회운영 규정	오리규정 A-02-023	2/4
7. 의결권,의결방법 7.1 이사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7.2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8. 결의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8.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2 경영에 관한 사항 8.2.1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8.2.2 이사회 규정 및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집행임원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개정 8.2.3 회사의 기본 경영방침과 종합운영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2.4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8.2.5 국내외 지점 및 법인 설치, 이전, 폐쇄 8.2.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8.2.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3 재무에 관한 사항 8.3.1 자산총액의 10%이상의 자산 취득 및 처분 8.3.2 자본금의 10%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8.3.3 관계회사 주식(자사주 포함) 취득 및 처분 8.3.4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8.3.5 차입 및 타인을 위한 입보 또는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3.6 자본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8.4 기타 8.4.1 관련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8.4.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HR	이사회운영 규정	오리규정 A-02-023	3/4
9. 이사회내 위원회 9.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9.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9.2.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9.2.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9.2.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2.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9.3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9.4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0. 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11. 의사록 11.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1.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2. 주관부서 이사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HR 팀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R	이사회운영 규정	오리규정 A-02-023	4/4
	본 규정은 2005 년 2 월 25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 년 2 월 24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 년 3 월 20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 년 3 월 16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 년 3 월 30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 년 5 월 3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